

2019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목 차

1. '19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1

2. 2019년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서 75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81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55

'19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019. 7.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일러두기〉

- 본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사업신청 예정자 및 대상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농업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시행지침서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신청, 사업시행 및 관리, 성과제고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개정과 유권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작성하였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및 복사, 인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1. 사업명은 어떻게 되나요?	13
2.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3.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13
4.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4
5. 지원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14
6. 들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14
7.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14
8. 식량작물공동경영체(기존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15
9. 농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5
10. '19년부터는 농지에 밭도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5
11. 집단화된 농지라는 용어에서 집단화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15
12.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나요?	16
13. 공동영농이란 무엇인가요?	16
14. 벼를 재배하는 경우 정부지원 RPC와 꼭 계약재배 및 출하를 하여야 합니까? ·	16
15. 우리 지역에는 정부지원 RPC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16
16. 그동안은 정부지원 RPC 등과 출하약정만 체결하고, 약정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가요?	17
17. 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내역사업)은 무엇인가요?	17
18.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도 있나요?	17
19. 사업시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18

2 농업법인 등 별도요건

1.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 요건이 있던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9
2. 왜 농업법인과 협동조합만 이런 별도 요건을 확인하고 농협은 확인하지 않나요? 19
3. 별도요건 충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9
4. 농업법인의 조합원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20
5. 농업법인의 조합원별로 출자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0
6. 농업법인의 출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20
7. 농업법인의 출자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나요? 20
8.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은 왜 확인하나요? 21
9.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1
10. 결산재무제표는 왜 최근 2년치를 요구하나요? 21
11. 농업법인의 자부담금 확인 요건이 상당히 복잡한데 무슨 의미인가요? 22
12.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3 사업부지

1. 사업부지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3
2. 농협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비 업무용 토지는 소유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3
3.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왜 사업신청을 제한하나요? 23
4. 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4
5. 사업부지 변경은 가능한가요? 24

4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1.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25
2.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25
3. 만약 우리지역에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5

5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1. 잡곡전문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26
2. 잡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6
3. 잡곡전문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6
4.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6
5. 잡곡전문은 공동영농면적 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7
6. 잡곡전문의 참여 농가수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7
7. 잡곡전문은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27
8. 잡곡전문은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이 없어도 되나요? 27
9. 잡곡전문은 출자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8
10. 잡곡전문은 출자조합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8
11. 잡곡전문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8
12. 잡곡전문 경과규정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9
13. 쌀과 잡곡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사업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9
14. 잡곡 전문 경영체 신청기준인 잡곡류 생산·유통 50% 이상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9
15. 이모작으로 잡곡류를 생산할 경우 잡곡전문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29
16. 벼 대신 마늘이나 양파, 유채 등을 재배한 경우 잡곡전문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29
17. 기존 들녘경영체로 지원을 받았던 경영체가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30
18. 기존 들녘경영체로 지원을 받았던 경영체가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면적을
변경해서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30

19. '19년에 기존 들녘경영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도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30
20. 기존 들녘사업과 잡곡전문 사업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30
21. 기존 들녘경영체에 안에서 별도의 또 다른 경영체를 구성해서 운영 및 신청할 수 있나요?	31
22. 유사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영체도 기존 들녘이나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31
23. 잡곡전문 사업은 논 타 작물 신청계획이나 실적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31
24. 잡곡전문은 교육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나요?	31
25. 잡곡전문을 1회차에 신청('19.2월말까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32

6 지원 및 신청제한

1. 지원제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3
2. 내역사업별로 총 지원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33
3. 총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4.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나요?	33
5.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를 지원받았던 경영체는 언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34
6. 사업신청 철회, 포기, 지방비 미확보, 사업비 이월 등의 경우 언제부터 제한을 받고 언제부터 제한이 풀리나요?	34
7.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4
8. 사업대상자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되는 기준이 있나요?	35
9. 사업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5

7 교육·컨설팅지원사업

1. 교육·컨설팅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36
2.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36
3.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는 사업신청 전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나요?	37

4. 교육컨설팅 사업을 1년차 추진하면서 시설·장비나 사업다각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37
5. 유사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38
6.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유사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8
7.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유사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 것은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38
8. 교육컨설팅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39
9.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의 의무량은 어떻게 되나요?	39
10.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서로 조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39
11. 시설·장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은 자동 선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0
12.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0
13.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40

8 시설·장비

1.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41
2. 시설·장비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41
3.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41
4. 시설·장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는데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41
5. 시설·장비 사업비가 예년에는 최소 2억에서 최대 4억원이었는데, 이렇게 차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2
6.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배수개선은 사업비와 별도로 추가지원 되나요?	42
7. 시설·장비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42

9 사업다각화

1. 사업다각화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43
2. 사업다각화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43
3. 토목 공사비를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43
4. 건축공사 중 비 상품화 시설을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44
5.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를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44
6. 사업다각화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45
7.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45
8. 사업다각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는데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45
9. 사업다각화 사업비가 예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5
10. 사업다각화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45

10 사업신청

1. 사업신청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나요? 46
2. 잡곡전문은 별도로 사업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46
3.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46
4. 제출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46
5. 신청서류 누락여부를 체크해 볼 방법은 없나요? 47
6. 사업계획서 서식에 우리 경영체와 상관없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11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

1.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지자체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48
2. 사업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언제 하나요? 48
3. 사업비 심의는 왜 선정·평가와 별도로 실시 하나요? 48
4. 사업비 심의는 누가, 어떻게, 언제 하나요? 49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언제 결정해서 알려주나요? 49

12 국고 및 지방비

1. 정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왜 요구하는 것인가요?
특히 지방비는 같은 세금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50
2.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50
3.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축소해서 부담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51
4. 반대로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자부담을 낮춰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51
5.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부담하는
원칙이 있나요? 51
6.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요? ... 52
7. 국고와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한다면 지방비는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52
8. 국고보조금도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2
9. 만약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2
10. 보조금 가내시(보조금 예산안 통지)란 무엇인가요? 53
11. 보조금 예산 통지(보조금 확정 통지 또는 총 사업비 확정 통보)란 무엇인가요? ... 53
1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란 무엇인가요? 54
13. 보조금 교부 통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54

13 사업추진

1.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무슨 의미이며, 누가, 언제,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나요? ... 55
2. 세부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55
3. 실시설계를 실시했더니 사업비 심의에서 인정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4. 사업계획 변경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56
5.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면적은 조정할 수 있나요? 57
6. 전년도에 사전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57
7. 사전준비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58
8.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8
9.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8
10. 관련 인허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8
11. 자부담 확보결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59
12. 시행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9
13.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59
14. 연초부터 입찰공고 및 계약, 착수 등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 60
15. 사업다각화처럼 2년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을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 60
16. 일괄 설계부터 시공 및 납품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나요? 61
17. 일괄 설계 및 시공, 납품 등이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하였나요? 61
18. 입찰 및 개찰은 꼭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62
19. 시행업체 선정시 최저낙찰 하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62
20.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2
21. 교육컨설팅 시행업체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63
22. 교육컨설팅 업체별 사업수행 한도가 있나요? 63

23.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63
24. 농기계나 가공설비 등 시설·장비 제작 및 납품업체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63
25. 사업완료 단계에서 성능시험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63
26. 입찰공고 기간은 얼마로 설정해서 운영해야 하나요?	64
27. 지자체의 입찰(계약)대행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64
28.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64
29.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65
30. 자부담은 언제 집행해야 하나요?	65
31. 자부담을 전액 우선 집행하여야 하나요?	65
32. 보조금은 언제 교부해 주시나요?	66
33. 사업비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66
34.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집행)해야 하나요? 혹시 현금거래도 가능한가요? ..	66
35. 시행업체에서 선금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66
36. 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67
37. 선금은 꼭 주어야 하나요? 안 주면 안 되나요?	67
38. 선금을 줄 때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67
39.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 집행을 자부담으로 먼저하고 차후 교부를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는지요?	67
40. 낙찰차액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68
41.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68
42.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69
43.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69
44.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9
45. 교육·컨설팅 수행업체서 지급하는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0

4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요? 70
47.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70

14 사후관리

1. 사업비 정산은 언제까지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71
2.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할 때 정산보고서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71
3. 국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증비용을 보조사업비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71
4.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국고 보조금인지 아니면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보조금인지요? 72
5.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72
6. 보조사업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3
7.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73
8.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 설정의 효력이 있나요? 73
9.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74

1. 사업개요

질의 사업명은 어떻게 되나요?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 '09년에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12년에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13 ~ '14년에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15 ~ '18년까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었으나, '19년도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의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행 논과 벼 중심에서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전면 개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질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집단화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작물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됩니다.
- 상법상 주식·합자·합명·유한회사 및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타 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제외됩니다.

질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참여 농지 및 농업인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이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 후 선정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 식량산업종합계획은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내역사업별로 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벼를 재배하는 경우 정부지원 RPC와 계약재배 및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에 해당되어야 하고, 조합원, 출자액, 운영실적, 경영체등록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그 외 내역사업별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

들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들녘은 들이 펼쳐진 곳, 들판을 의미합니다.

질의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질의

식량작물공동경영체(기존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25명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파종·육묘에서부터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 좀 더 쉽게 말해 50ha 이상의 넓은 들에서 25명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질의

농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수 있는 논과 밭을 말합니다.
- 그래서, 이미 다른 과수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심어서 키우고 있는 과수원이나 초지(목장), 염전 등은 제외됩니다.

질의

'19년부터는 농지에 밭도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벼 이외의 식량작물(잡곡류 : 두류, 맥류, 서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밭이면 사업계획(공동영농면적)에 포함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집단화된 농지라는 용어에서 집단화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하나의 들판에 모여 있는 수준을 말하고, 수치화한 거리나 집적도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의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나요?

- 하나의 들판이 아니더라도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인접한 들판에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이 가능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공동영농이란 무엇인가요?

- 파종, 육묘, 이앙, 정식, 제초, 방제, 수확, 선별, 포장, 판매 등 농작업, 즉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영농 전통이 있었고, 최근에는 중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 등으로 공동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벼를 재배하는 경우 정부지원 RPC와 꼭 계약재배 및 출하를 하여야 합니까?

- 쌀(벼)은 RPC를 중심으로 규모화, 전문화를 제고하여 수입쌀 및 대체품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 그래서, RPC와 들녘경영체간 계약재배를 통해서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우리 지역에는 정부지원 RPC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RPC가 아니더라도 농업법인(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 중 연간 쌀 1,000톤 이상을 가공하는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면 가능하며, 경영체가 이런 도정공장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능력과 판매능력을 갖춘 곳을 통해서 지역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 농업법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농협은 가공능력 등이 부실한 곳은 인근 농협과 통합을 통해 시설 폐쇄 및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비 농업법인은 농업인들이 공동운영 및 소유하지 않고, 수익이 농업인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그동안은 정부지원 RPC 등과 출하약정만 체결하고, 약정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가요?

- '18년까지는 출하약정만 체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2,000톤 이상 가공능력, 80% 이상 수매, 50%를 품종표시 판매 등

- 그래서 '19년부터는 좀더 현실성 있는 조건으로 개선하였으며, 사후관리 (사업신청단계 평가 강화, 사후 연차평가 실시 등)를 강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내역사업)은 무엇인가요?

- 3가지가 있는데 ① 교육·컨설팅, ② 시설·장비, ③ 사업다각화 지원입니다.

질의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도 있나요?

- 벼 건조·저장시설과 쌀 도정시설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외에도 시설·장비에서 차량은 광역방제기 탑재차량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 차량의 용도외 사용, 양도, 대여 등 부당사용 사례 다수 발생

- 사업다각화에서는 숙박시설과 축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중

- 아울러 '19년부터 만성적으로 생산이 과잉되고 있는 쌀(벼)는 가급적 후순위로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벼 재배용 전용 시설·장비(육묘장, 이앙기, 광역방제기, 콤바인 등) 등은 지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업시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 사업을 신청받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라는 의미입니다.

-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해당 시·군이라는 의미입니다.

- 다른 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나 aT,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이 지자체가 아닌 농어촌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농업법인 등 별도요건

질의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 요건이 있던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합원과 출자금, 운영실적, 자부담금 확보 요건 등이 있습니다.

질의

왜 농업법인과 협동조합만 이런 별도 요건을 확인하고 농협은 확인하지 않나요?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중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규모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농업인의 참여비율이 낮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보조 및 저리 융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식량생산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일정 규모(농법인 조합원 5인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등)를 갖추었는지와 운영 능력(사업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다만, 농협은 설립인가 당시부터 보통 조합원 1,000명 이상, 출자금 5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별도요건 충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보통 매년 3월말)에는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군의 검토단계와 농정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신청서가 반려될 것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검토 및 심의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이며, 해당 지자체에는 향후 일정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의

농업법인의 조합원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 농업법인의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고, 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질의

농업법인의 조합원별로 출자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출자액이나 비율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공동영농을 추구하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한 또는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독단적인 경영과 사유화 등의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조합원이 모두 균등 출자를 해서 책임주체가 모호해지는 구조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영체내에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농업법인의 출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 출자는 현물과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 현물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도 가능하고, 농기계 같은 동산도 가능합니다.
- 상당수의 경영체에서 법인 사무실 부지와 건물, 특히 조합원들이 보유한 농기계를 출자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농업법인의 출자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나요?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고, 출자액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의**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은 왜 확인하나요?**

- 보조시설은 한번 지원되면 최소 5년에서 수십년간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농업법인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부도난 경우가 많아서 운영능력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되었던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운영실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설립일자를 1차로 확인하고, 결산재무제표 등을 이용해서 2차로 확인합니다.

질의**결산재무제표는 왜 최근 2년치를 요구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서 최소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서 2년치 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또한,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는 2년 이상,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선정·평가과정에서 추가로 재무제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의 재무상태나 운영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일부 경영체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지만, 최근에 와서 경영부실 등이 발생하거나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의

농업법인의 자부담금 확인 요건이 상당히 복잡한데 무슨 의미인가요?

- 자부담금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출자액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부담금은 법인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 자체자금이 아닌 대출을 받게 되면 운영에 많은 부담도 되지만, 대출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으로 자기가 부담할 자금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출자금은 시설투자나 영농비용 등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여러 농업법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추가 출자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시에는 법인에 실제 현금으로 50% 정도만 있어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및 판매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아닌 대기업 등이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은 지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참고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참여는 1인, 지분은 최소 10%만 있어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서, 비 농업인의 참여에 제한이 없고, 최대 90% 까지도 지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3. 사업부지

질의

사업부지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조합원이나 법인 대표(조합장)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는 아직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사업을 신청할 경영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많은 지역에서 사업대상자(경영체)로 선정되면 토지 소유주가 변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폐단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분쟁에 의해서 보조시설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질의

농협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비 업무용 토지는 소유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질의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왜 사업신청을 제한하나요?

- 건축물은 부지에 따라 관련 인허가로 인해서 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건립은 가능하더라도 인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내에 건립이 곤란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또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 건립가능 여부와 시설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없고, 설사 실시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

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립 예정부지에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이 있으면 재산권에 제한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건축물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사업부지 변경은 가능한가요?

-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하나,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되어 사업비 심의를 다시 받은 후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건립에 따른 인허가는 부지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시설계 등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하는 등 사전준비 상황이 대폭 변경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서도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질의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지역 단위 식량산업분야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말합니다.

질의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 '18년 하반기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년 사업신청자부터 단계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사업다각화는 '19년 사업신청자부터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부터,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잠곡전문은 1년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다각화는 '20년, 시설·장비는 '21년, 교육·컨설팅은 '22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

만약 우리지역에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지역 내 이해 관계자(농협, 농업법인, 농업인 등)와 협의하여 쌀을 비롯하여 밭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역 내 식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제고 등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도입이 적용되는 시기부터는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업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5.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질의 잡곡전문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쌀(벼) 이외의 식량작물(두류, 맥류, 서류, 잡곡류 등)을 주로(50% 이상) 생산 및 유통하는 경영체를 말합니다.

질의 잡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본 사업에서는 쌀(벼) 이외의 모든 식량작물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등
 - 맥류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라이밀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돼지감자 등
 - 잡곡류 :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피 등

질의 잡곡전문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잡곡은 쌀에 비해 생산 및 유통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조직 육성 및 농가 조직화 등이 상대적으로 미진해서 경과규정을 두어 농업인과 경영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그동안 쌀에 집중된 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이 부족했던 면도 고려했습니다.

질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동영농면적,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출자액, 조합원, 운영실적 등이 있습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공동영농면적 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공동영농면적은 기본 50ha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 행정구역에 있을 경우 10ha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21년 신청자부터 50ha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다각화는 '21년, 시설·장비는 '22년, 교육·컨설팅은 '23년 신청자부터 50ha로 적용 예정입니다.

질의

잡곡전문의 참여 농가수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생산 및 유통이 규모화 되어 있지 않은 면을 고려해서 당분간 최소 15명으로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가능하면 서둘러서 수립하는 것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잡곡전문은 '19년도 신규사업이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면을 고려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업다각화는 '20년, 시설·장비는 '21년, 교육·컨설팅은 '22년 신청자부터는 종합계획이 수립 및 선정되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이 없어도 되나요?

- '19년 신청(1차, 2차)에 한해 교육컨설팅 추진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년은 사업 첫해이고, 논 타작물 재배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올해에 한해 先(선) 시설지원 後(후) 조직화교육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19년에 사업을 신청(1차·2차)해서 선정되는 사업대상자(경영체)는 '20년에 교육·컨설팅 사업대상자(경영체)로 자동 선정되어 농가조직화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출자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컨설팅은 1억원 이상이고,
- 시설·장비는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21년 신청자부터는 2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사업다각화는 2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20년 신청자부터는 3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출자조합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컨설팅은 농업인 5명 이상이고,
- 시설·장비는 농업인 5명 이상이면 가능하나, '21년 신청자부터는 1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사업다각화는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나, '20년 신청자부터는 1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컨설팅은 1년 이상이고,
- 시설·장비는 1년 이상이면 가능하나, '21년 신청자부터는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사업다각화는 2년 이상이면 가능하나, '20년 신청자부터는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잡곡전문 경과규정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19년 사업신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사업을 신청하는 년도를 의미합니다.
-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사전 준비를 한 후 실제 예산 지원은 신청한 다음연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쌀과 잡곡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사업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쌀(벼)과 잡곡(두류, 맥류, 서류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영체는 '18년도에 잡곡류를 50% 이상 생산하였거나, '19년도에 50% 이상 생산할 계획이 있으면 잡곡전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

잡곡 전문 경영체 신청기준인 잡곡류 생산·유통 50% 이상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생산액이 50% 이상인 경우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이모작으로 잡곡류를 생산할 경우 잡곡전문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벼를 재배 후 이모작으로 맥류 등을 생산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 논은 벼를 재배한 경우 쌀 면적으로 산정하고, 벼 이외 논 타 작물을 재배한 면적만 잡곡류 면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벼 대신 마늘이나 양파, 유채 등을 재배한 경우 잡곡전문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벼를 재배하지는 않았지만, 논 타 작물로 재배한 작목이 식량작물이어야 합니다.

질의

기존 들녘경영체로 지원을 받았던 경영체가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잡곡 생산이 50% 이상이었거나, 향후 잡곡 생산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의

기존 들녘경영체로 지원을 받았던 경영체가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면적을 변경해서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들녘경영체는 정부에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면적이 등록되어 있고, '19년부터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면적 조정은 최대 30%까지만 축소를 허용하고 있어서 인위적인 축소 후 신청은 곤란합니다.

질의

'19년에 기존 들녘경영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도 잡곡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9년도에 한해 가능합니다.
 - 기존 잡곡 생산이 50% 이상이었거나, 향후 잡곡 생산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19년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잡곡전문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

기존 들녘사업과 잡곡전문 사업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사업신청은 동시에 접수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된 내용을 판단해서 기존 들녘인지 잡곡전문인지 판단해서 선정·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기존 들녘경영체에 안에서 별도의 또 다른 경영체를 구성해서 운영 및 신청할 수 있나요?

- 농협의 경우에는 별도의 농가와 농지로 작목반을 추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들녘경영체 농협 참여확대방안 참조)
- 그러나, 농업법인의 경우 참여 농가수와 농지가 규모화 되어 있지 않아서 400ha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농가와 농지가 두 경영체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질의

유사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영체도 기존 들녘이나 잡곡 전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발식량작물산업육성,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 발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기 지원 받은 시설 등의 활용도와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시설·장비 등의 실제 필요성, 낭비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 및 심의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의

잡곡전문 사업은 논 타 작물 신청계획이나 실적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 '19년 신청(1차, 2차)에 한해 논 타 작물 신청계획이나 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교육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나요?

- '19년도에는 지원이 없으나, '20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19년에 사업을 신청(1차·2차)해서 선정되는 사업대상자(경영체)는 '20년에 교육·컨설팅 사업대상자(경영체)로 자동 선정되어 농가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잡곡전문을 1회차에 신청('19.2월말까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 금년도 2분기에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서 금년 봄부터 사용할 농기계 등을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업 첫해이고 경영체와 지자체에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선정·평가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사업규모 등의 탄력성이 매우 높아서 희망하는 다양한 기계·장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군수)님 및 지방의회 보고와 협의는 반드시 신청 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지원 및 신청제한

질의 지원제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내역사업별 총 지원횟수, 신청철회 및 포기, 사업비 이월, 지방비 미확보 및 지연확보, 허위서류 제출, 출하약정 미이행, 사무실 미확보 등이 있습니다.

질의 내역사업별로 총 지원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교육·컨설팅은 5회, 시설·장비는 3회, 사업다각화는 2회입니다.

질의 총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정 경영체에 지나치게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다른 경영체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영체에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총 지원 횟수를 '19년도부터 확대하였습니다.

질의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추진 중에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성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및 감액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를 지원받았던 경영체는 언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이 종료되고 2년간은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업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다다음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18년 사업종료 경영체는 '20년에는 신청 가능('21년에 지원 예정)

- 다만, 잡곡전문은 '19년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

사업신청 철회, 포기, 지방비 미확보, 사업비 이월 등의 경우 언제부터 제한을 받고 언제부터 제한이 풀리나요?

○ 해당 사안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적용되고 최소 3년에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 다만, 사업신청 및 포기는 '18년 신청자 및 포기자부터 적용되어 '19년부터 '21년까지 지원이 제한되고, 사업신청은 '20년에 '21년 사업부터 가능합니다.

- 지방비 및 허위서류 등은 '19년 사업대상자(경영체)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경영체와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협의 및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질의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농업법인 등의 경우 독립된 별도의 법인 전용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동영농을 위해서는 수시로 법인 운영진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공동농작업단 등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법인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별도 전용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다만, 농업법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까지는 인정하고 있으며, 가정집이나 마을회관, 타 업체의 사무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함

질의

사업대상자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되는 기준이 있나요?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와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또한,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향후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군과 시·도, 농정원 및 aT, 농림축산식품부 까지 많은 관계자들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비심의, 예산확보 등을 진행하고
- 확보된 국비와 지방비가 이월 및 불용 또는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 신청자들의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7.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질의

교육·컨설팅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참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교육은 참여 농업인들이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및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전환, 밭 작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비용
 - 재배기술 및 농기계 조작·관리 교육,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은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 생산역량 혁신 등 생산 분야에서 경영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받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서 개발·보급한 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각 지역 및 품목 등 경영체별 특성을 반영해서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와 컨설팅을 경영체서 직접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일괄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 경영체에서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으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면을 고려했고,
 - 일부 경영체에서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사용하거나 부당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질의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는 사업신청 전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나요?

-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농기계 및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사전에 참여 농가 간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공동 농작업 등에 대한 협의와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즉, 농가조직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지원되는 농기계 및 가공시설 등이 사유화되거나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 내역사업별로 일정 수준의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잡곡전문은 '19년 신청자에 한해 예외 적용

질의

교육·컨설팅 사업을 1년차 추진하면서 시설·장비나 사업다각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 '19년 사업신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 '20년부터는 시설·장비는 2년 이상, 사업다각화는 3년 이상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년도에 시설·장비나 사업다각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8년도 이전에 교육·컨설팅을 추진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상반기에 70% 이상 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20년도에 시설·장비나 사업다각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를 포함하여 그동안 2회 또는 3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내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까지 포함하여 2회 또는 3회 이상 지원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잡곡전문도 시설·장비는 '21년, 사업다각화는 '22년부터 적용되므로 사전에 교육·컨설팅을 미리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유사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유사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유사사업이나 지자체 및 농협 등에서 지원한 사업은 교육 및 컨설팅 내용이 농가조직화와 공동영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별도 심의를 통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인정이 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유사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발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 또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업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유사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 것은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교육 및 컨설팅 내용이 농가조직화와 공동영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별도 심의를 통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했다는 객관적인 증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완료보고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매년 2월말까지 심의를 요청해 주시면 3월 중순까지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

교육·컨설팅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경영체 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중 90%인 2,700백만원은 보조이고, 10%인 3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 '18년까지는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였는데 실제 교육비는 면적이 아니라 농가수에 비례해서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 컨설팅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 양질의 교육·컨설팅을 위해서는 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인정되어서 사업단가를 3천만원으로 상향 통일하였습니다.

질의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의 의무량은 어떻게 되나요?

- 회원농가와 리더농가 대상 교육을 각각 3회(총 6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실습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컨설팅은 총 10회 이상, 컨설턴트가 2명 이상 참여해야 하고, 8개월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서로 조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교육비(1,510만원)와 컨설팅비(1,490만원)은 서로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예전에 교육비와 컨설팅비를 서로 조정해서 사용을 허용한 결과, 농업인들은 식사나 선진지 견학 등 소모성 비용에 많이 사용하자고 주장하셨고, 그로 인해 교육과 컨설팅의 질이 모두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일부의 경우 반대로 컨설팅업체에서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절반씩 배정해서 집행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교육비 내에서 예시된 내용은 참여농가수와 품목 등에 따라서 지자체 및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 컨설팅 내용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시설·장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은 자동 선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상당수 경영체가 농가조직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시설·장비나 사업다각화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가들의 인식 전환과 조직화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라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셋트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울러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불편과 중복 평가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다각화 내에는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교육·컨설팅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서 굳이 별도의 교육·컨설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면과 중복지원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질의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10%로 총 보조율은 90%입니다.

8. 시설·장비

질의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농산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관수·배수 등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시설·장비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생산 이후에 필요한 선별, 건조, 세척, 가공, 포장 등은 유통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다각화로 지원창구를 통일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규모 건조기·선별기·품질분석기(밀 NIR) 등은 생산단계 농기계는 아니나 생산과 밀접한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기준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이고, 선정·평가결과와 작목전환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시설·장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는데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경영체)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최소 1억원부터 3억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 논 타작물 전환 및 밭작물 관련 장비는 작목전환에 따른 신규 장비 소요를 감안해서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며, 배수개선 사업비는 재배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시설·장비 사업비가 예년에는 최소 2억에서 최대 4억원이었는데, 이렇게 차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8년까지는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였는데, 50ha 이상이면 상당히 규모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농지면적보다는 공동 농작업 수준에 따라 장비소요가 다르고,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동농지면적을 부풀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작목전환 시에는 그동안 보유하지 않았던 신규장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점도 감안을 하였습니다.

질의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배수개선은 사업비와 별도로 추가지원 되나요?

-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배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휘되는 암거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시설·장비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10%로 총 보조율은 90%입니다.

9. 사업다각화

질의 사업다각화지원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농가소득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우선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참여농가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나서, 논 타작물 전환 및 밭작물 연계 등 농지 이용을 다양화하고 전문 단지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 아울러, 만성 공급과잉 상태인 쌀 중심의 계획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외에도 각 항목별 사업비 사용한도(토목공사는 5% 이내 등) 등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목 공사비를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부지가 진입로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성토 및 절토 등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 건축이나 시설·장비 등에 투입할 예산이 부지조성에 투입되어서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업부지를 사업대상자(경영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원칙과 취지에 비추볼 때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수준의 부지조성은 사업대상자가 담당하여야 합니다.
- 그래서,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및 포장 공사, 부대설비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 허용(총 사업비의 5% 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건축공사 중 비 상품화 시설을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업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품화 시설 건립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5%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소명하면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추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를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업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에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5%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소명하면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추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 실시설계, 인허가, 지자체 일상감사, 입찰서류 준비 등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면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되므로 사업시행지침서에 안내된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제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지자체 담당 주무관님과 수시로 협의하셔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기준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이고, 선정·평가결과와 취급 품목,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는데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최소 5억원에서 50억원 내외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사업다각화 사업비가 예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취급 품목이나 사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억원을 지원해서 일부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반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평가와 사업비 심의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고, 집행가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사업다각화지원사업의 지원조건(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 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20%로 총 보조율은 80%입니다.

10. 사업신청

질의 사업신청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경영체에서는 매년 3월말까지 문서로 해당 지자체 농업관련 부서(농정과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잡곡전문은 별도로 사업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전년도에 사업안내 및 신청 등을 받지 못해서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19년도 사업은 2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면 되고, '20년도 사업은 당초대로 3월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신청서와 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농정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제출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내역사업의 종류와 취급품목, 사업계획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해당이 없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한 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신청서류 누락여부를 체크해 볼 방법은 없나요?

- 많은 경영체와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누락해서 사업대상자(경영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신청 단계에서의 실수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요건 점검표(사업시행지침 붙임 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히 점검을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과 시·도에서도 기본요건 점검표를 이용해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시·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기본요건 검토단계에서 탈락됨

질의

사업계획서 서식에 우리 경영체와 상관없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품목이나 경영체 운영방식 등이 달라서 해당이 없는 항목은 삭제 또는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선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

질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지자체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출서류에 누락은 없었는지 등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 그 이후 사업성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집행 가능성, 농업인 소득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실시하여 부적격 사업 대상자(경영체)를 걸러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업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언제 하나요?

- 선정 · 평가 실무는 기존 들녘은 농정원, 잡곡전문은 aT에서 담당하여, 실제 평가는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에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만, '19년도 잡곡전문 사업대상자(경영체)는 금년도 3월에 평가를 실시 해서 4월초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선정 · 평가 절차 : 기본요건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순으로 진행 예정

질의 사업비 심의는 왜 선정 · 평가와 별도로 실시하나요?

-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농가조직화, 작부체계 전환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고, 물리적인 시간상의 문제로 사업비 심의는 동시에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전문분야가 달라서 평가단을 달리 구성해서 운영해야 내실있는 사업비 심의가 가능합니다.
- 사업비 심의는 간이설계 및 인허가 검토, 세부사업비 산출 등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과도한 부분은 삭감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사업비 심의는 누가, 어떻게, 언제 하나요?

- 기계·장비, 건축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발표평가와 비슷한 형식으로 매년 사업다각화는 7월, 시설·장비는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언제 결정해서 알려주나요?

- 매년 8월말에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해서 9월 15일 전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2. 국고 및 지방비

질의

정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왜 요구하는 것인가요? 특히 지방비는 같은 세금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 정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해당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경영체)의 책임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매년 세금의 상당부분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자체에 이미 교부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정부분 부담이 필요합니다.

질의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후 국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이 곤란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고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비율과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10% 또는 20%로 매우 낮은 사업이라서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해 주는 것은 사업대상자(경영체)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비 낭비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축소해서 부담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 지방비 부담 비율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하향조정은 곤란합니다.
- 특히, 지방비를 축소해서 총 사업비가 줄거나, 사업대상자(경영체)가 지방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지방비는 국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자부담 이므로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자부담을 낮춰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편성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자부담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한데, 보조사업은 사업 대상자(경영체) 명의 등기 원칙이고, 사업대상자(경영체)의 자부담이 없으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서 곤란합니다.
- 또한 지방비를 다른 국·도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회수대상으로 불가합니다.

질의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부담하는 원칙이 있나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지역특화사업에 준해서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시행지침서에서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요?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에서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설령 정의가 되어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질의

국고와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한다면 지방비는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의 예산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방비는 금년도 추경이나 '20년도 예산에 편성된 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국고보조금도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비와 도비는 예외적으로 시·군의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추경 때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질의

만약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대부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국가에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에 하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국고는 모두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자(경영체)는 억울하시더라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군수님과 지방의회에 정식 보고 및 협조 요청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질의

보조금 가내시(보조금 예산안 통지)란 무엇인가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안 통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가내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내시(假內示)는 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얼마큼 지원할지를 사전에 안내하는 용어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이 없을 것을 가정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계획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 사전에 가내시(보조금 예산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시·도와 시·군에서 국고 보조예산 편성과 지방비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체에서도 자부담 확보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집니다.

질의

보조금 예산 통지(보조금 확정 통지 또는 총 사업비 확정 통보)란 무엇인가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정부 및 지자체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경영체)가 해당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자부담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총 사업비를 확정했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의**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란 무엇인가요?**

-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결정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즉, 보조금을 주겠다는(교부) 결정을 안내(통보)하는 것으로서, 실제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보조금 교부 통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보조금 교부 통보는 실제 보조금을 지원, 즉, 돈을 주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13. 사업추진

질의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무슨 의미이며, 누가, 언제,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나요?

- 세부사업계획은 사업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 및 사업비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 수립은 경영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이후부터 매년 11월초까지 수립하면 됩니다.
 -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추진 일정(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부담 확보계획, 인허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의

세부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세부기준을 확인해서 해당 시·군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

실시설계를 실시했더니 사업비 심의에서 인정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시설계를 하면 인정받은 사업비 보다 보통 크게 나오고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 왜냐하면, 사업비 심의에서 결정한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제100조에 의거 낙찰율(보통 70% 내외)을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실시설계 금액이 인정받은 사업비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실시설계 금액이 150%를 넘을 경우에는 사업비 심의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추가되었거나, 규격 및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질의

사업계획 변경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경영체에서는 해당 시·군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시·군에서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인 경우 자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시면 되고, 만약 30%를 초과 또는 3억원 이상 변경 건은 시·도에 검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시·도는 50% 이하의 자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50%를 초과 또는 5억원 이상 변경 건에 대해서만 농림축산식품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 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참여농가와 공동영농 면적은 조정할 수 있나요?**

- 매년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면적이 조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최대 30% 이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농가수와 면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에 조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시·군에서는 10% 이하 조정은 자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되고, 10% 초과 시에는 시·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시·도에서는 20% 이하 조정은 자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되고, 20% 초과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30%를 초과하는 조정은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거나, 추후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질의**전년도에 사전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교육·컨설팅은 다음연도 1월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전 협의 및 자부담 확보 정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 시설·장비는 입찰을 위한 서류와 자부담 등을 준비하고 지자체에서 일상 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건축물이 포함된 사업다각화 등은 실시설계를 9월말까지 실시해 주셔야 하고, 지자체 설계검토와 일상감사는 10월말까지, 관련 인허가는 12월말까지, 입찰서류와 자부담 확보 등을 전년도에 사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전준비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 사전준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보통 매년 1월초)에 실시하도록 규정(「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즉시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지원이 곤란해집니다.
-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제때 준비해서 시설·장비 등을 봄철 농번기 전에 가능하면 많이 구매해서 영농철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질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전년도 9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실시설계 이후에도 지자체의 설계검토와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전년도 10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대부분 지자체의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결과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보완하는데 1 ~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질의

관련 인허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전년도 1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다음해 1월초에 입찰공고 후 시공업체 등을 선정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자부담 확보결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농협조직은 자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농업법인 등은 이사회 회의록과 실제 자부담을 입금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자부담 통장 개설은 반드시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 하셔야 합니다.
 - 이는 사업 개시 전에 자부담을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자부담을 인출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허위 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

시행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및 건축물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공고한 후 2월말까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 교육·컨설팅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서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고,
- 원가계산까지 실시해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해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 도리어, 최저가 입찰을 실시할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또한, 농번기 이전에 신속한 사업 착수 및 교육 등을 위해서는 입찰과정 생략이 필요합니다.

질의

연초부터 입찰공고 및 계약, 착수 등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 동절기가 종료되는 3월부터는 영농준비에 들어가야 해서 농가교육 등이 어렵고,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 연초부터 교육 및 농기계 등을 구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농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예전에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파종기 등이 부족해서 논 타작물 재배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또한, 농기계를 비롯한 시설·장비는 빨리 구매할수록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질의

사업다각화처럼 2년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을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을 건립, 구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 다만,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규제 및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 이로 인해 사업비 실집행이 매년 저조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서도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일괄 설계부터 시공 및 납품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나요?

- 「국가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제8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 제5호 등에 계속사업과 공사분할 계약금지, 민간 先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일괄 설계 및 시공, 납품 등이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하였나요?

-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제8항에서는 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 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센티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 하도록 규정(「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되어 있습니다.

질의

입찰 및 개찰은 꼭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의계약을 실시하더라도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양질의 물품 구매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므로, 가급적 3군데 이상 업체를 비교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시행업체 선정시 최저낙찰 하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대행)에는 추정가격에 따라서 85.5% 또는 86.75% 또는 87.75%의 낙찰율이 적용되지만,
- 사업대상자(경영체)에서 직접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주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5. 민간자본이전)」에서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건설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입니다.
-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하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0조의4에 의거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시행업체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서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와 컨설턴트이어야 합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업체별 사업수행 한도가 있나요?

- 업체별로는 최대 20개소까지만 가능하고, 컨설턴트별로는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질의

농기계나 가공설비 등 시설·장비 제작 및 납품업체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질의

사업완료 단계에서 성능시험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 납품 받은 시설·장비 등은 반드시 요구한 성능 등이 발휘되는지 검수를 하여야 합니다.
- 복잡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입찰공고 기간은 얼마로 설정해서 운영해야 하나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소 7일
에서부터 최대 40일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긴급입찰(7 ~ 40일 → 5일)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지자체의 입찰(계약)대행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 사업대상자(경영체)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입찰대행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계약)대행은 「지방계약법」 제8조에 의거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대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준비와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계약을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준용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가급적 전년도 12월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시·군에 문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자부담 확보, 인허가 등 사전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자부담은 언제 집행해야 하나요?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계약단계에서부터 자부담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 자부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제1항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자부담을 전액 우선 집행하여야 하나요?

- 보통은 자부담을 전액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다각화의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10억원일 때 연간 자부담이 2년간 각각 1억원이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 향후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대상자(경영체)가 선정되어 지원될 때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보조금은 언제 교부해 주시나요?

- 자부담이 전액 집행된 후 선금 및 기성고 등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교부해 줍니다.
- 선금 및 기성고 등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시·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해당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교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업비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계약금, 선금, 기성고, 잔금 순으로 사업(공사 등) 추진실적에 비례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집행)해야 하나요? 혹시 현금거래도 가능한가요?

- 보조금 사용방식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에 의거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거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시행업체에서 선금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선금은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의무 지급율 이상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은 20억원 미만 공사와 3억원 미만 물품제조의 경우 계약금액의 50%입니다.
- 아울러, 집행을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선금 지급 활성화제도가 시행중이므로 시행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행업체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밀어내기 식으로 집행하면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으로 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 최대 계약금액의 70% ~ 8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 선금은 꼭 주어야 하나요? 안 주면 안 되나요?

- 시행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소 의무지급률 만큼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선금을 줄 때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와 이행담보를 위한 채권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질의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 집행을 자부담으로 먼저하고 차후 교부를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 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지출을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하면 그에 타당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다만, 대부분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 실제 사업이 추진(준공 및 납품 등)된 경우 외상 영수증(세금계산서의 청구함에 체크 등)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시공 및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낙찰차액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7. 연구개발비(207목)와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에 따라 부대공사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낙찰차액을 예상하여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환급은 두가지 법령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첫 번째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환급대상 기자재(농기계 및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
-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과세사업자 및 겸업사업자가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2항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4항에서 사업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으므로 정산 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가급적 세무사 및 회계사 등과 협의한 후 정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2항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4항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질의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행적인 이월 허용으로 인해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때 농기계 등 시설·장비 등을 구매하지 못해서 농업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 정부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제도 개선한 사항입니다.

질의

교육·컨설팅 수행업체서 지급하는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하여 20만원 ~ 4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민간인은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준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별도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관리(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등은 가능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1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 후 전액 반납 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자부담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정산 시 사업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사업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설공사 견적비용 등 교부 전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이전에 자부담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14. 사후관리

질의

사업비 정산은 언제까지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e나라 도움에 등록하고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할 때 정산보고서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의거 국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대상자(경영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거 국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대상자(경영체)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국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증비용을 보조사업비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제5항에 따라 보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국고 보조금인지 아니면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보조금인지요?

-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은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이라 했으므로, 국비 보조금 기준입니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자(시·도 및 시·군)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합니다.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질의

보조사업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조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며, 지원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또한, 관련 서류는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5조의2 등에 따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기계 및 장비류는 최소 5년에서 7년, 건축물은 부기등기 후 10년 정도 사후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 설정의 효력이 있나요?

-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중요재산 승인은 효력규정으로 판단하여 「민법」상 두 당사자 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2004다5563, 2004다5556)
 - 2016.4.29.일 이후 부기등기 된 중요재산을 승인없이 임의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3항)되어 있습니다.

질의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권자(중앙관서의 장)와 보조사업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등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 근저당 설정기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개별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와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재산(내용연수 미경과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필요)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도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1,50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00	2,000	2,000	3,000			
	국 고	1,000	1,000	1,000	1,500			
	지방비	800	800	800	1,200			
	자부담	200	200	2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6,750 (잠곡 2,75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 ~ 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읍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7,000	7,000	5,000	13,500			
	국 고	3,500	3,500	2,500	6,750			
	지방비	2,800	2,800	2,000	5,400			
	자부담	700	700	500	1,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백만원)	4,367 (잡곡 80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u>집단화된 들녘(논+밭)</u>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작물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3년, 5~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3,200	14,000	17,000	10,918			
	국 고	5,280	5,600	6,800	4,367			
	지방비	5,280	5,600	6,800	4,367			
	자부담	2,640	2,800	3,400	2,1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 *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전문 경영체는 10ha 이상(다만, 행정구역 및 집단화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50ha 이상이면 인정)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등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붙임 5 참고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 일정비율 및 기간 :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2개소 이내, (시·군) 5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3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1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 ② (경과규정) '19년에 한해 1회 이상 추진한 경우(①항목 충족 조건)도 자격 부여
 -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시설·장비는 '18년 사업자('17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경과규정**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1 ~ 4년간 유예 적용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경영체가 취급하는 품목 중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찰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생산·유통이 50%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A영농법인 또는 B농협이 벼와 잡곡을 동시에 취급하는데 벼를 100ha 재배할 경우 50ha 이상('19년 기준) 잡곡류를 생산하면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신청 가능. 단, 100ha 벼 재배 후 이모작으로 100ha 맥류를 생산할 경우 사업대상이 아니며, 벼 이외 논 타작물 재배 후 이모작으로 맥류를 생산하면 사업대상.

구분 (적용시기)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공동영농면적 (50ha)	10ha (‘23년)	10ha (‘22년)	10ha (‘21년)
참여 농가수	15명	15명	15명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	미 적용 (‘22년)	미 적용 (‘21년)	미 적용 (‘20년)
교육·컨설팅 (수행실적[2~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출자액 (2 ~ 3억원)	1억원	1억원 (‘21년)	2억원 (‘20년)
출자 조합원 (10 ~ 15명)	5명	5명 (‘21년)	10명 (‘20년)
운영실적 (2 ~ 3년)	1년	1년 (‘21년)	2년 (‘20년)

* 적용시기: '19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영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3.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으로 신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발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 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탈,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19년 잡곡 전문 들녘경영체는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연차평가를 마련·시행하여 2021년도 신청자부터 적용(추후 안내)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위 30% 이내 : 5억원, 31 ~ 60% 이내 : 2~3억원, 60% 미만 : 1억원

* 논 타작물 전환 및 밭작물 관련 전용장비는 1~2억원 이내에서 사업계획 및 전환면적 등에 따라 추가 지원

*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배수개선(무굴착 암거배수 및 굴착식 암거배수 등)은 재배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티, 소수재(왕겨)	○ 자재비용 = 4,302천원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잡곡 공동경영체는 '19년 11개소('23년까지 300개소)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잡곡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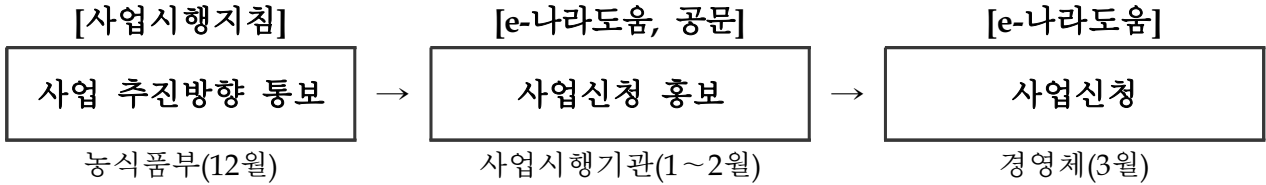
다.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 사업계획 평가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 잡곡 공동경영체는 '19년 4개소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 참여 의제),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출자액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쌀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 이수·확인증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 내역 등),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등
- (지자체 제출서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 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현장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 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또는 aT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3명 내외)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시설·장비는 7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정원 또는 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 시설·장비는 사업물량에 따라 권역별 현장실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 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 시설·장비 지원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정원 또는 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4~6명 내외 구성)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 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다각화는 7월초, 시설·장비는 8.31.까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정원 또는 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 (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인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인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2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2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20.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6.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을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업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또는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 농정원은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요 기계·장비</u> * 광역방제기, 콤팩트, 트랙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〇〇〇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체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 향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연차평가를 개발, 개별 경영체 지원에 반영(2021년 사업신청자부터 적용)

2. 2020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0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19.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붙임 1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 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8년)

등급	2017년 월 임금	2018년 월 임금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방법
리더 농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 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형)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징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 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 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 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7.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3 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년차 필수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필수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3년차 필수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필수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사도○○시군○○별안농협)

-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될 수 있음(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 본 점검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거짓신청에 해당되어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벌칙 적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중하게 작성 필요
- * 해당사항 및 검토내용은 작성자 및 검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신청자의 현황에 맞게 작성 필요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잡곡전문 해당여부	잡곡 품목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50% 이상입니까? (벼를 재배한 농지는 잡곡 생산면적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찰쌀보리는 쌀 이모작으로 잡곡 생산면적은 8.3%(공동경영면적 206ha 중 순수 잡곡은 팔 17ha만 해당(17 ÷ 206 = 8.3%))
농지 및 품목	회원 농가가 보유한 농지(논, 밭)와 품목에 대해서 모두 제시하였나요? * 다년생 작물(과수, 인삼, 목초 등)이 식재된 농지는 제외	○		회원농가가 보유한 논 200ha와 밭 30ha 중 과수 및 인삼 등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 24ha를 제외하여 제시하였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I, II, III, IV, V, VI를 모두 작성하였나요?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의 경우에는 IV는 제외, V와 VI는 작성해야 함)	○		시설·장비를 신청하였으며, IV는 생략하였고, V와 VI는 작성하였음
계획수립 주체	사업계획서를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수립하였나요?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립하였으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제출하였음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번호순으로 스캔해서 각각 별도 파일로 하였나요?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번호 순으로 스캔해서 각각 별도 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음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		농업회사법인임
지원	식량작물	○		공동경영면적 206ha로 벼+찰쌀보리 50ha, 논콩+찰쌀보리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잡곡 전문은 단일 시·군은 10ha, 여러 시·군은 50ha 이상)			139ha, 팔 17ha인
	참여 농가(농업법인 포함)가 25명 이상입니까?(잡곡 전문은 15명 이상)	○		167명임(벼 50명, 논콩 100명, 팔 17명)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		품목별로 공동농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식량산업 종합계획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		벼는 육묘, 방제, 수확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콩, 보리, 쌀은 파종, 방제, 수확, 정선을 공동으로 수행 중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입니까? (기존 들녘사업의 다각화만 해당, 잡곡전문은 해당 없음)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잡곡 전문은 '20년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시설·장비라서 해당 없음 또는 '19년 4월에 선정되었음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습니까?	○		○○통합RPC에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음 또는 ◆◆정미소와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음
자력 및 요건	조합원 (교육·컨설팅) 5인, (시설·장비) 10인, (다각화) 15인 이상이 농업인(생산 자단체 포함)입니까? (잡곡 전문은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5인, 다각화 10인)	○		농업인 조합원이 11인으로서 시설·장비 기준(10인)을 충족함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1억원, 다각화 2억원)	○		총 출자액이 1억5천만원으로 시설·장비 기준(2억원)을 충족 하지 못함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본담금 이상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상 출자액 기준)	○		출자액이 1억5천만원으로 자본담금(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함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자본담금 10%로서 5천만원임)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본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 습니까?('18년도 기준 재무제표 기준)		○	자기자본이 18백만원으로 자본담금의 50%인 25백만원보다 7 백만원 부족하여 충족하지 못함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세부 사업별 자격 및 요건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잠곡 전문은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1년, 다각화 2년) * 기준일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는 일자 기준(매년 3.31일 이전)		○	2017.4.1.일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1년 11개월로서 시설·장비 기준(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최근 변경등록을 하였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지역내 농업인들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해당없음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공동농업경영을 1년 11개월 운영하였음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잠곡 전문은 해당 없음)		○	교육·컨설팅을 첫째 추진하고 있으나, 상반기에 70% 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1월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중에 있고,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제외하고 완료 예정임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잠곡 전문은 해당 없음)		○	교육·컨설팅을 2018년에 지원을 받아서 완료하였음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컨설팅을 다른 유사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잠곡 전문은 해당 없음)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2017년에 지원을 받아 완료하였음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최근 10년간)		○	교육·컨설팅은 3회(2015, 2017, 2018), 시설·장비는 1회(2016) 지원 받았으며, 다각화는 지원받지 않았음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를 최종 지원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하였나요?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장비를 2017년에 지원 받아서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p>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p> <p>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p> <p>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 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p> <p>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p> <p>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p> <p>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p> <p>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p> <p>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p> <p>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p>	○	○	<p>2018년에 다각화사업을 신청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p> <p>‘19년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해당 없음</p> <p>‘19년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해당 없음</p> <p>‘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되어 해당 없음</p> <p>‘20년 사업신청 시부터 적용되어 해당 없음</p> <p>시중은행에 승인 없이 담보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p> <p>그동안 출하약정만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p> <p>00면 00로 ***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p> <p>벼 건조, 저장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음</p>
시설·장비	생산 단계에 필요한 농기계(가 아닌 시설·장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범용컴바인, 콩 파종기로 해당 없음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지게차, 운반차량, 선별기, 정선기, 건조기, 보관창고, 사일로, 가공시설 등)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15% 수준으로 설계하였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숙박시설과 축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총 사업비의 4.5% 수준으로 설계하였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쌀 관련 생산·유통시설 등은 총 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설계하였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홍보·마케팅 및 교육·컨설팅을 총사업비의 7% 수준인 3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사업다각화 I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radio"/>		공동영농과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수립하였음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radio"/>		배당 적립 및 회계, 법률자문 등은 이미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외하였음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radio"/>		공동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였음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input type="radio"/>		홍보, 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이미 수행하였기에 제외하였음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사업다각화 II (건축물 및 관련 기계·장비) (시설·장비 중 육묘장은 일부 작성)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간이설계도를 3종을 검토하였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설계사무소와 간이설계를 실시하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서 9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기초 및 배수공사 등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50억원)의 5%인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input type="radio"/>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이 총 사업비의 7%인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장을 100여명 수용 규모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함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가공시설은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였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4.5%인 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임·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측정 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였음
검토내용				풍과 보리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로 검토하였음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밀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였고, 콩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로 검토하였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자동제어시설은 자동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품질검사장비는 자동처리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비로 검토하였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저온저장고는 최저 10℃까지 온도관리가 가능한 창고형태로 검토하였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동기 완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당해 범인명의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음 또는 당해 농협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가동기까지 실시하였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습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이 없음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습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현재 농지(논)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음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육묘장도 검토)	<input type="radio"/>		현재 작물(벼)를 재배 중에 있으나, 수확 후 11월에 성토 실시 예정임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육묘장도 검토)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input type="radio"/>		시청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 소관 인허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유관부서에 도 방문해서 문의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상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견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축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	<input type="radio"/>		실시하였음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요?(육묘장도 검토)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		2019년도 1분기 농정심의회에서 의결 받았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다각화만 해당되며, 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이 아님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짐(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		2019. 4. 10일에 시장님 보고 및 결재를 받았음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		2019. 4. 12일에 시의회 의장님과 소관 위원장님께 사업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당해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 후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음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구비서류	1. 신청서	○		신청서 제출
	2. 세무사업계획서	○		세무사업계획서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2019. 2. 13.)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18년만 제출, '17년은 미 제출
	5. 납세증명서(구. 국제완납증명서)	○		제출(2019.2.12.)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미 제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		이사회 결의(2019.1.28.)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	미 제출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	미 제출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이력서 제출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2019.3.6.)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		사무실 외부와 내부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제출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공동 농작업단 직제는 제시하였으나, 담당자 및 운영현황 등은 미 제출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	미 제출
	16. 공동육묘장 운영매뉴얼	○		벼는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제출 콩과 보리는 직파로 재배해서 육묘를 실시하지 않음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		벼 공동육묘일지 제출('17, '18)
	18. 공동방제기 운영매뉴얼	○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계획 및 실적 제출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	방제관련 사진만 제출하고 일지는 미 제출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	벼와 보리만 제출하고, 콩은 미 제출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	미 제출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조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		○○농협RPC와 체결한 출하약정서 제출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		'17~'18년에 출하한 내역서 제출
	24. 교육 이수·확인증	○		대표이사 ○○○, 이사 ○○○외 5명 제출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25. 참여농가 명부	○		벼, 보리, 콩 작목반별 명부 및 필지, 출자내역 제출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	칼짚보리는 참여농지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필은 미 제출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항공사진 제출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		'18년 논 타작물(논 팔) 재배농가 명단 제출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		동계 답리작(보리) 직불금 지급내역 제출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미 제출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		'18년, '19년 벼, 보리, 콩 작목반별 운영회의 실적 등 제출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		벼, 보리, 콩에 대해 들녘공동경영체육성사업 운영규약 제출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		종자대, 비료, 건조료 등 환원 실적 제출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출자자 명부 제출
	35. 표준생산매뉴얼	○		벼, 보리, 콩 생산표준 매뉴얼 제출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	미 제출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	미 제출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	벼, 보리만 제출하고, 콩은 미 제출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	재해보험 가입농가 없음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	고정자산 관리규정은 제출하였으나, 중앙회의 모범안으로 ○농협에서 제정한 규정은 없음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미 제출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		○○평가와 상호업무협약서 체결 자료와 납품 실적 제출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체배 또는 납품 실적		○	미 제출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	미 제출
	44. 친환경인증서		○	미 제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미 제출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이사회 의결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미 제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		파종기, 콤바인,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컨설팅 등 세부내역 제출
	48. 비교 건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자동계량포장기, 정맥기, 원료탱크,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1개 소에서만 건적 산출 제출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		항공사진 제출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		지적도 제출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농협 소유 확인)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미 제출
	53. (건축물 관련)토지 인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시에서 최신한 문서 제출(2019.3.20.)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해당	없음	기존 건물이 없어서 해당없음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	1종만 제출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	미 제출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경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시 심의의결서 제출(2019.2.21.)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미 제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잠곡 포함),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6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1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5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4-2. 자체 평가 (12점)	3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5. 가점 (6점)	(6)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6.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6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잠곡 포함),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6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충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지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지자체 평가	5-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5-2. 자체평가 (16점)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수립 중(1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현장평가(잠곡 포함),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현장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 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잠곡 포함),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10점)
		8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4-2. 자체평가 (14점)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수립 중(2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 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 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 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잡곡분야, 현장 및 발표 평가)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1-1.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 품목의 경쟁력(10)	10	8	6	4	2	①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의 품목이 품질, 가격, 브랜드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5)	5	4	3	2	1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농업혁신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② 사업목표는 경영체의 역량과 해당작물의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3.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10)	10	8	6	4	2	① 생산·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②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로드맵)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4.자금 투자계획 적정성(5)	5	4	3	2	1	①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연차별 투융자계획이 적절한가?(금액, 재원 확보 방식 등) ② 세부 사업별 산출근거, 지원단가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투자규모 적정성 등)
	1-5.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10)	10	8	6	4	2	① 신규시설·장비의 설치, 기존 시설·장비의 활용, 지역 내 시설·장비의 연계 활용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중복 투자 등) ② 개별 시설·장비 이용수준을 넘어선 종합적인 시설·장비 활용 계획의 유무
2. 사업추진역량의 충분성 (40점)	2-1.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15)	10	8	6	4	2	① 경영체의 조직기반이 충분한가?(사업경험, 사업규모, 관내 생산량 대비 물량 점유율, 조직운영체계, 확고한 의지·비전 등)
		5	4	3	2	1	② 시·군 내 해당 품목 농가에 대한 조직화 수준이 충분한가?(관내 해당품목 생산농가 대비 계약재배 참여율, 관리체계 등)
	2-2.생산계획 및 생산성 향상(10)	5	4	3	2	1	① 생산면적의 규모화, 단지화 여부 ② 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적정 수준의 시설·장비 및 재배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5	4	3	2	1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품종, 재배관리, 친환경인증 등)
	2-3.관로 확보 및 홍보·마케팅 계획(10)	10	8	6	4	2	① 대량수요처 확보 등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② 홍보, 마케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4.성장 가능성(5)	5	4	3	2	1	① 사업기반과 역량을 고려할 때 경영체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3. 농정거버넌스 기반 (10점)	3-1.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연계성(5)	5	4	3	2	1	①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 해당 품목의 연계성 여부
	3-2.농정 및 사업조직간 협력체계의 충분성 및 지자체장의 의지(5)	5	4	3	2	1	① 경영체 등과 지자체가 농정 파트너로서의 협력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② 해당 품목 및 경영체에 대한 지자체장의 육성·지원의지가 충분한가?
4. 종합평가	4. 종합평가(10)	10	8	6	4	2	① 수급조절 등 정책 협조도 및 수행능력 ②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성공 가능성 등
합계	100점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군·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 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 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절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 예) 업체별 2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구분	단기('19~'20)	중장기('21~)
① 컨설팅업체·컨설턴트 인증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	재인증제도 준비 등 인증제 고도화
② 사업프로세스 관리 * 수행계획, 중간 및 완료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재인증 시 반영, 자격 검증)	수행계획서 및 완료 보고 검증 등 품질 관리 강화
③ 성과점검·확산 * 종합평가, 피드백 등	교육·컨설팅 표준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	성과진단·평가 및 환류 등 성과 확산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현장·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 ① 신규인증: 1차(서면·현장평가) → 2차(발표심사) → 3차(최종인증심의)
- ②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 ①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 ③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 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 ④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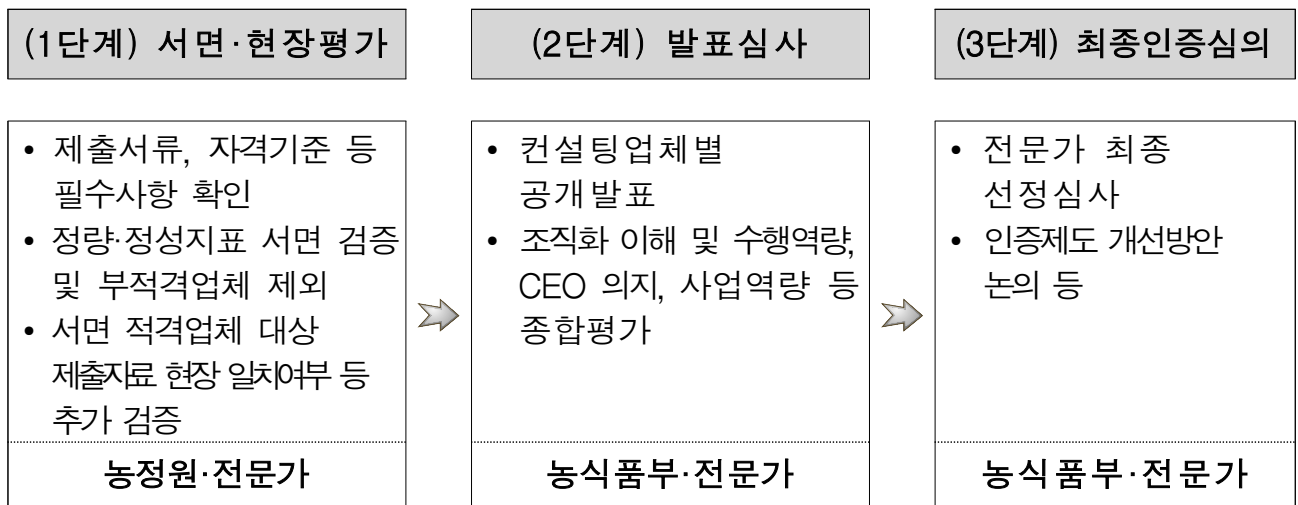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①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 신규인증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전문가)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량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
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 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
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
심사표 참조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 최종 신규 인증 > —

<p>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p> <p>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p>
--

2 재인증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
3건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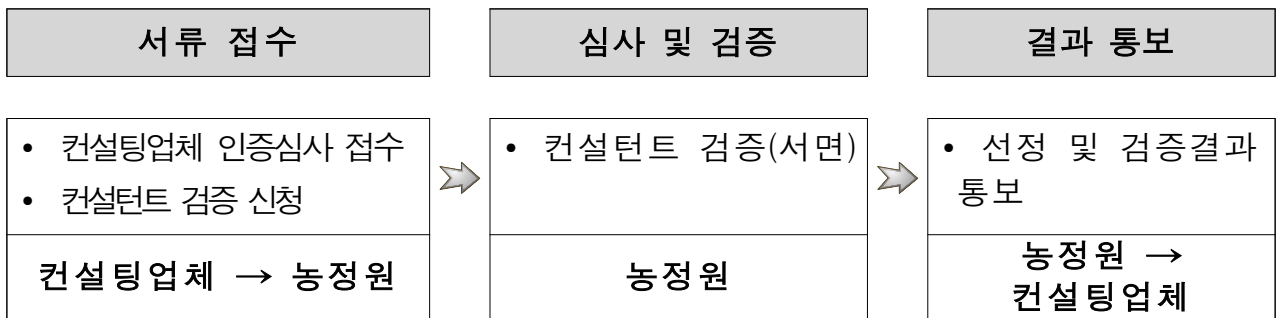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컨설팅 경력(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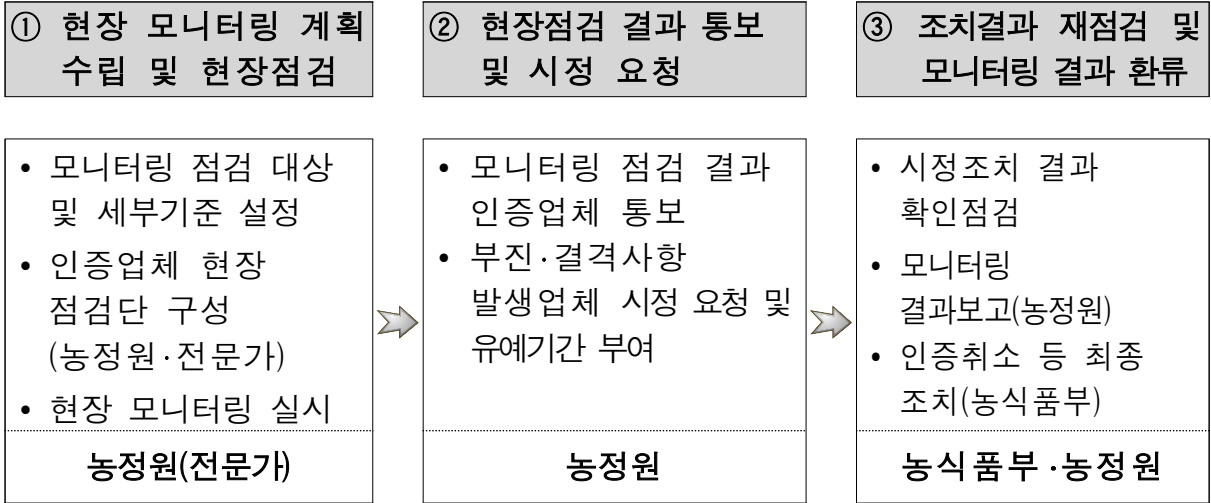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같음)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특별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명칭

수립 2000년 00월 00일

1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2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0000법인

목 차

I.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 현황	150
II.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 운영성과	158
III.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59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166
V. 사업비 확보계획	179
VI. 기대효과	180

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m ²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기본현황(* 쌀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주요 브랜드		
○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면적(ha)	GAP쌀 인증면적	친환경쌀 인증면적	매입량 (톤)	계약재배 농가수(호)	
					농가조직체수	농가수
전체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사업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해보험 가입 현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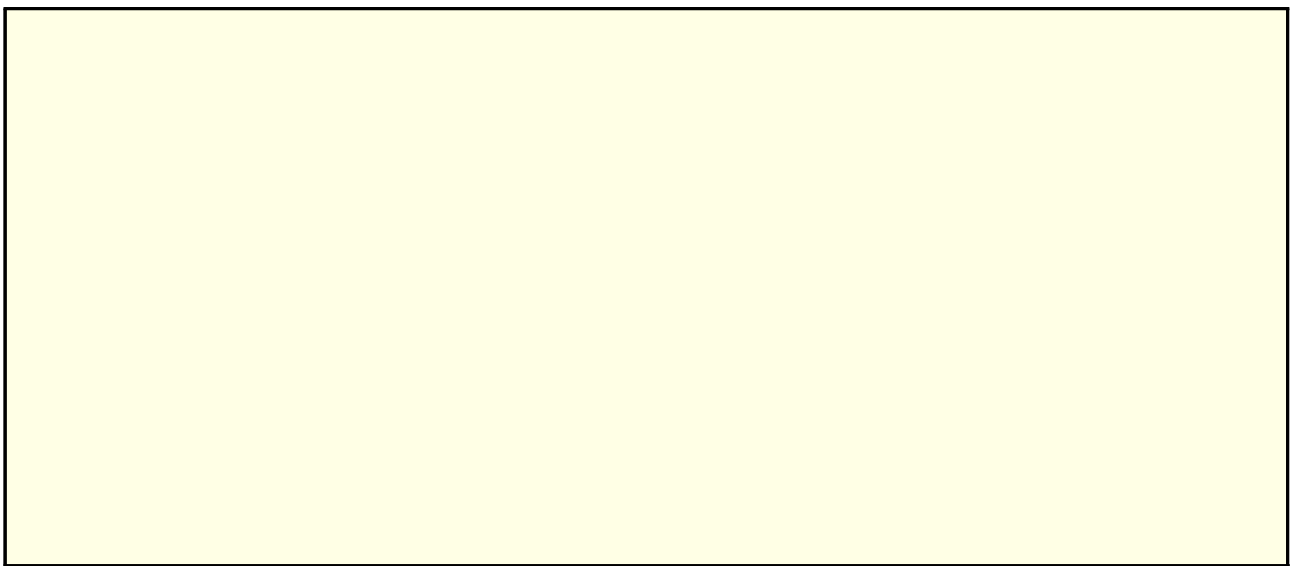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체계(조직도)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관리 실태(2019년 3월말 기준)

사무실 존재 여부(여, 부)		현황관 비치 여부(여, 부)	
이사회 등 대표자 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총회 등 참여농업인 전체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회의록 작성 여부(여, 부)		공동영농 작업일지 작성 여부(여, 부)	
회계서류 보관 여부(여, 부)		2017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여, 부)	
RPC 약정 계약서 작성 여부(여, 부) (*쌀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기술정보 등 교육책자 배부·비치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방법 및 금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8명	식량작물공동(들 녘) 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 교육			국가 지자체 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고품질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2017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18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19(계획)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면적

논 면적(A)	이모작 면적(B)	타작물재배면적(C)	비율(%)	
			B/A	C/A
ha	ha	ha		

※ 이모작 재배 현황(2018년 수확 기준)

이모작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하계 타작물 재배 현황(2019년 재배계획 기준)

타작물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 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18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밭				자기논	타인논	밭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랙터(원/ha), 이앙기(원/ha), 콤바인(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2019년 2월말 기준)

한우사육		젓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① 사업유무 :

②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 공동육묘 운영현황(2018년)

(*쌀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고구마육묘시설 보유경영체는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m ²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_____ 상자, 지게차 _____ 대, 온탕기 _____ 대,		
	파종기 _____ 대, 육묘대 _____ 층 _____ 대, _____ 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어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_____ kg/년, 상토량 _____ 톤/년, 농약 _____ 원/년		

-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 * 주변지역 육묘 가격 : _____ 원/장
- * 자재비용 : 종자비 _____ 원/년, 상토비 _____ 원/년, 인건비 _____ 원/년
- * 혜택 농가 수 : _____ 명
- * 시군별 지원여부
- * 총매출액(A) : _____ 천원 / 총비용(B) : _____ 천원 / 경영이익(A-B) : _____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18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_____ ha * _____ 회, 임대방제면적 _____ ha * _____ 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_____ 원/ha, 임대방제단가 _____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트럭 _____ 대(_____ 톤)		

-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 * 총매출액(A) : _____ 천원 / 총비용(B) : _____ 천원 / 경영이익(A-B) : _____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방제기 활용계획 : 축산방제, 건축물 폭파,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 기타 공동농작업 면적 :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주요 취급 품목별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_____	시간/년, 현장지도 _____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독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_____ g/상자		
10a당 상자 수	_____ 상자수/10a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 침지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성묘		
이앙시기 및 방법	적정시기 _____, 적정이앙주수 _____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_____ 본답 _____		
시비관리	밑거름 _____ kg/10a 새끼거름 _____ kg/10a 이삭거름 _____ kg/10a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_____ 보완방제 _____		
	병해충자재 종류 _____		
물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떼기		
수확시기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백사용), 건조수매시 45~50℃(종자용 40℃)		
벗짚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6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7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년도)	지원 후 (20○○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주요 취급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 장비 작성)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작업면적,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ha), 계획면적(ha)

- 공동작업별 추진방안 작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2019년 공동영농 작업료 책정 계획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작업 : 계획(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원/300평)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가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 구입방안

- (보조사업)

- (자체구입)

□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부족한 시설의 추가 확보 방안
(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규모,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공동육묘장

- 현재 보유현황(동, m²), 확보계획(년 동, m²)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시설규모 등

② 건조시설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 확보방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 불가)

③ (기타 시설명)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 확보방안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 마련에 소요자금 확보 계획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인력 확보 및 이용 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

-

조직원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 향후 1년 이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연번	수행업체	참여대상	교육·컨설팅계획			비고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산금액(천원)	
총계		명			천원	
1						
2						
3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물량) 기술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관련내용 기술

□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목별 인증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농산물에 대한 GAP·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관련 인증기관, 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품목, 인증 재배면적 기술
- 품질기준
 -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 선정, 작부체계 운영, 토양관리 등 생산일관 관리 내용, 품질기준 준수 방안 등 기술
- 고품질 생산(재배) 체계구축
 - 매뉴얼 구비·준수 확인 절차, 교육 등 기술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토양·수질·생산물 검사 및 평가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4. 경영체 운영 계획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19년)												사업추진년도(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투자계획 (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2. 추진목적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2) 시장·환경 분석

- 마케팅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3)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3.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

4. 세부계획

1) 사업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제(공동농업 추진 관련, 세부실행 방안 제시)

- 조직화 부분 전략
- 생산 부분 전략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전략
- 가공·유통 부분 전략
- 홍보·마케팅 부분 전략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19년(사업준비)	2020년(사업기간)	2021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 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 2020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4) 2021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I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소방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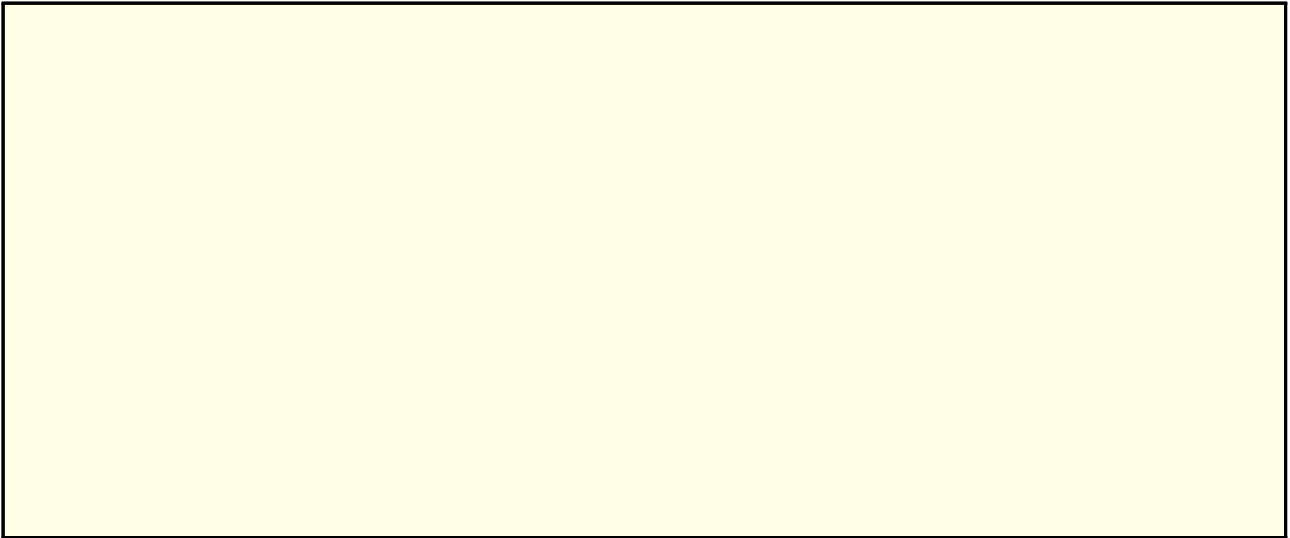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19년)												사업추진년도(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부지 확보 현황

- 부지 확보 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 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 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	조건부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 가능.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 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 도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 법	배수구역, 개인하수 처리시설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임. ○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에 의함. ○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 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 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 설 설 치 축 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 리시설 설 치계획	조건부	○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p>[건축관련]</p> <p>○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p> <p>[개발행위관련]</p> <p>○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p>○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m³, 수평투영면적 150m²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p> <p>[지적관련]</p> <p>○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p>			
종합 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VI.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지수(호)	매출액(백만원)
2019년(A)						
2020년						
2021년						
2022년(B)						
증감%(B-A)/A						

* 공동농작업을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9. 1. 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09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 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같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국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이하 '자부담계좌')에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보조사업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 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의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자부담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3자 이체방식(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이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을 자부담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을 자부담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먼저 자부담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자부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

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제6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재무제표 및 결산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지원제한의 처분명령을 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83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게시판·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 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당 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 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 나.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 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 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6.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비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 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 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립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 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

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
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
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
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
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
57조제2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련 감사보고서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가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용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용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용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용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 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 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 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 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

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 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인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시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

합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도회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5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

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일 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을 명령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사유 등(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말한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

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구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을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관련 환수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보조금의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

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 등의 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84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 부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8호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명단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 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

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부 칙 <제309호, 2018. 12. 27.>

이 훈령은 2019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p>사 업 개 요</p> <p>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자 ○ ○ ○</p>	↑ 80 cm ↓
← 110cm →	

나. 준공후 안내문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커형 표지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p>■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p>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p> <p>*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p>
<p>■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p>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p>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5 : 제77조제2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text{담보제공 승인한도} = \text{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text{보조금}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right) - \text{기 담보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율}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times \text{감정평가액} + \text{재산상의 이득금} \right)$$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금}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right) + (\text{재산상의 이득금} \times \text{보조율})$$

-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 공통 지원요건

-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 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 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 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 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월 ○○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 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초과 시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초과 시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²)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p>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p> <p>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p>
천원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²)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1. 신청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지			m ²		yyyyymmdd ~ yyyyymmdd		
시설			m ²		yyyyymmdd ~ yyyyymmdd		
설비			식		yyyyymmdd ~ yyyyymmdd		
장비			대		yyyyymmdd ~ y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한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
-----	--

5. 첨부서류

-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 ⑦ 대환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환요청시)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 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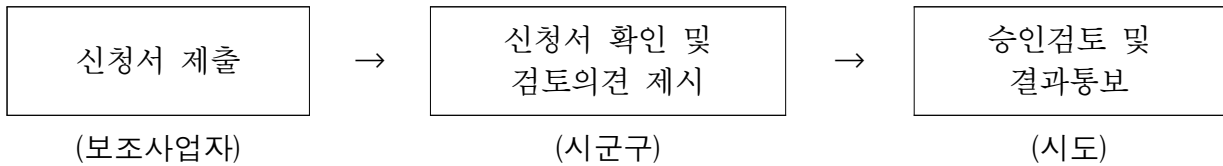
-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 승인절차



-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e나라 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 사업추진체계상 지자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승인검토·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19. 1. 2.]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9호, 2019.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

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 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시행령」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

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

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제3조제4호에 의한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

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

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34조(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보조금법」 제26조의9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보조금 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5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직위의 임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의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35호에 따라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는 안전상정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안전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된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구성원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제3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1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조금법」 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7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8호,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8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7호,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발행일 : 2019년 7월 15일 (개정판)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Tel. 044) 201-1838

집 필 : 농림축산식품부 정순일·윤준수

검 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김정주

인쇄처 : 장군기획 Tel. 044) 862-7949